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7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유용원·박덕흠·김성원

백종헌 • 임이자 • 배준영

김용태 · 김도읍 · 김형동

신동욱 • 유상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가사휴직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교, 준사관 및부사관또한 동일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5호등).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 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 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 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49조제3항제4호 중 "이내"를 "이내."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제4 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기간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직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4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기간 을 포함하여 총 휴직기간을 계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휴직) ①・② (생 략)	제48조(휴직) ①・② (현행과 같
	<u>o</u>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③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	
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	
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	
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	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 경우.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 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 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 정한다.

- 6. (생략)
- ④ ~ ⑧ (생 략)
- 제49조(휴직기간) $(1 \cdot 2)$ (생 제49조(휴직기간) $(1 \cdot 2)$ (현행과 략)
 -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 3. (생략)
 -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단서 신설>
 - ④ (생략)

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 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 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u>정하는 요건을</u>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6. (현행과 같음)
- ④ ~ ⑧ (현행과 같음)
-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이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 ④ (현행과 같음)